

국방부령

병 무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동원관리국과 사회복무관리국을 신설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병무청 소속기관 6급 2명을 5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에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관련 상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공직자 등 병적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6명, 9급 4명) 중 1명(9급 1명)은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2021년 2월 28일까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지방병무청 인력 1명(5급)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병역처분”을 “병역면탈자 병역처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병역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정보관리과 및 병역조사팀을”을 “병역자원과·병역조사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정보관리과를”로, “병역조사팀을”을 “병역조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 및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장 밑에 입영동원관리국장 1명 및 사회복지부관리국장 1명을 각각 두고, 각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입영동원관리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임한다.

④ 서울지방병무청 입영동원관리국에 병역자원과, 병역판정검사과, 병역조사과,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과, 동원소집과, 동원훈련과를 두고, 사회복지부관리국에 사회복지과, 복무관리과, 산업지원과, 고객지원과, 정보관리과를 둔다.

제31조의2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팀)”을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조사팀장”을 “병역조사과장”으로 한다.

제7장(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2020년 2월 28일”을 “2021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명”을 “10명”으로, “5명”을 “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5”를 “278”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 “20”을 “21”로, 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3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6”을 “279”로 하고, 일반직 계 “272”를 “27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 “21”을 “22”로, 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30”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1,494”를 “1,50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484”를 각각 “1,49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9”로, 행정사무관 “55”를 “56”으로, 행정주사 “207”을 “205”로, 행정주사보 “256”을 “263”으로, 의료기술주사보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498”을 “1,50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488”을 각각 “1,49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9”로, 행정사무관 “57”을 “56”으로, 행정주사보 “263”을 “270”으로, 의료기술주사보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제1호 각 표 외의 부분 “2020년 2월 28일”을 “2021년 2월 28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0”을 각각 “9”로 하며, 의료기술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국방부령 제9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병역자원국) ① ~ ④ (생략)	제7조(병역자원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병역처분</u>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병무 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3. <u>병역면탈자 병역처분</u>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 · 병역판정검사와 · 현역입영과 · 동원관리과 · 사회복무과 ·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u>병역자원과 · 현역모집과 · 동원소집과 · 동원훈련과 · 산업지원과 · 정보관리과</u> 및 <u>병역조사팀</u> 을 더 두며,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에는 <u>병역조사팀</u> 을 더 두고, 강원지방병무청 · 충북지방병무청 ·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에는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 ----- ----- ----- ----- ----- ----- ----- ----- ----- ----- <u>병역자원과 · 병역조사과 · 현역모집과 · 동원소집과 · 동원훈련과 · 산업지원과 · 정보관리과</u> 를 ----- ----- <u>병역조사과</u> 를----- ----- -----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
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신 설>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행정사무
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 4. (생략)

③ 삭제

<신 설>

제31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및 대
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
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

-----.

② 서울지방병무청장 밑에 입영
동원관리국장 1명 및 사회복지무
관리국장 1명을 각각 두고, 각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입영동
원관리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
임한다.

⑤ -- 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④ 서울지방병무청 입영동원관
리국에 병역자원과, 병역판정검
사과, 병역조사과,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과, 동원소집과, 동원
훈련과를 두고, 사회복지관리국에
사회복무과, 복무관리과, 산업
지원과, 고객지원과, 정보관리
과를 둔다.

제31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및 대
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
사과) -----

· 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7조(평가대상 조직) 「병무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의2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
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한
시정원 11명(8급 6명, 9급 5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방부령 제902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
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 병역조사
과장-----.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8조(한시정원) ① -----

----- 2021년 2월 28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명----- 4명-----

-.

국방부령 제902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은 각각 202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병역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판정검사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에는 병역자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0년 8월 2
9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8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

<삭 제>

명으로 본다.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
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
관 1명)은 202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8월 30일 이
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
주사 1명으로 본다.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75</u>	<u>278</u>	+3
·	·	·	
·	·	·	
일반직 계	<u>271</u>	<u>274</u>	+3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4</u>	<u>15</u>	+1
행정사무관	<u>20</u>	<u>21</u>	+1
·	·	·	
·	·	·	
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29</u>	<u>30</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76</u>	<u>279</u>	+3
·	·	·	
·	·	·	
일반직 계	<u>272</u>	<u>275</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4</u>	<u>15</u>	+1
행정사무관	<u>21</u>	<u>22</u>	+1
·	·	·	
·	·	·	
행정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29</u>	<u>30</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서기관	1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u>	<u>1</u>	<u><삭 제></u>	-1
<u>방송통신사무관</u>			
<u>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4</u>	<u>1,502</u>	+8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484</u>	<u>1,492</u>	+8
일반직 계	<u>1,484</u>	<u>1,492</u>	+8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u>	<u>9</u>	+1
행정사무관	<u>55</u>	<u>56</u>	+1
.	.	.	
행정주사	<u>207</u>	<u>205</u>	-2
.	.	.	
행정주사보	<u>256</u>	<u>263</u>	+7
.	.	.	
의료기술주사보	<u>35</u>	<u>36</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8</u>	<u>1,506</u>	+8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488</u>	<u>1,496</u>	+8
일반직 계	<u>1,488</u>	<u>1,496</u>	+8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u>	<u>9</u>	+1
행정사무관	<u>57</u>	<u>56</u>	-1
.	.	.	
.	.	.	
행정주사보	<u>263</u>	<u>270</u>	+7
.	.	.	
의료기술주사보	<u>35</u>	<u>36</u>	+1
.	.	.	
.	.	.	

[별표 8]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8조 관련)

1.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u>2021년 2월 28일</u>)	
총계	<u>9</u>
일반직 계	<u>9</u>
의료기술서기	6
의료기술서기보	<u>3</u>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u>2022년 2월 25일</u>)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서기보	1